|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신청서**  **www.momnbabyexpo.co.kr 2019. 8.8 (목) ~ 8.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제32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서울 중구 청구로4길 39, 4층(신당동,청운빌딩) (주)유아림  Tel. 02-2236-2771 Fax .02-523-7051  E-mail. expo@yuarim.com | | | | | | | | |
|  | | | | | | | | |
| **1. 참가업체 (전시자)** | |  | |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홈 페 이 지 | |  | | |
| 주 소 |  | | | | | | | |
| 업 태 |  | | | 종 목 | |  | | |
| 담 당 자 |  | | | 소속/ 직책 | |  | | |
| 전 화 |  | | | 핸 드 폰 | |  | | |
| F A X |  | | | E - MAIL | |  | | |
|  | | | | | | | | |
| **2. 부스신청** | | (VAT별도) | | | | | | |
| **부스구분** | **단가** | | **신청부스** | | **참가비** | | **비고** | |
| 기본부스 | \2,500,000 / 부스(3m \* 3m) | | ( )부스 | | \ | | 전시면적 + 조립부스 | |
| 독립부스 | \2,200,000 / 부스(3m \* 3m) | | ( )부스 | | \ | | 전시면적만 제공 | |

**● 참가신청서 제출 후 즉시 계약금(참가비의50%)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미입금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 참가비 납입처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2-532781 예금주 - 주식회사 유아림 (※입금시 업체명 필히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대시설 신청** | | | (VAT별도) | | | | | | | | | | | | | | |
| **구분** | | **단가** | | | | **신청내역** | | | | **금액** | | | | | **비고** | | |
| 전기 (주간) | | ￦70,000 / kW | | | | ( ) kW | | | | \ | | | | |  | | |
| 전기 (24시간) | | ￦100,000 / kW | | | | ( ) kW | | | | \ | | | | |  | | |
| 전화 | | ￦100,000 / 회선 | | | | ( ) 회선 | | | | \ | | | | |  | | |
| 네트워크 | | ￦150,000 / port | | | | ( ) port | | | | \ | | | | |  | | |
| 급배수 | | ￦200,000 / 개소 | | | | (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각종 신청 및 디렉토리 정보 기재** | | | | | |  | | | | | | | | | | | |
| 기본부스 간판명 (13자 이내)  기본부스 참가 신청업체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참가업체명 (13자 이내) | | | |  |  |  |  | |  |  |  |  |  |  |  |  |  |
| 출입증 신청수량 | | | |  | | | | | | 초청장 신청수량  (방문객 사전 홍보용으로 제공) | | | | |  | | |
| 전시품목 | | | | □ 태교용품 □ 출산용품 □ 임산부용품 □ 안전용품 □ 임산부서비스 □ 영유아식품  □ 영유아서비스 □ 영유아조기교육 □ 문구˙완구˙게임 □ 도서 □ 가구˙인테리어 | | | | | | | | | | | | | |
| 전시품목 상세 | | | |  | | | | | | | | | | | | | |
| 브랜드명 | | | |  | | | | | | | | | | | | | |
| ※ [참가업체명] 란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은 쇼가이드지, 배치도, 참가업체 출입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간판명과 참가업체명은 동일하게, 띄어쓰기와 구두점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사용은 불가합니다.)  ※ 브랜드명으로 노출 원할 시, 간판명과 참가업체명도 동일하게 브랜드명으로 기입바랍니다.  ※ 전시품목과 브랜드명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배치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 **후면의 박람회 참가규정에 동의하며, 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람회 주최측인 (주)유아림에**  **상기와 같이 제32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온라인 참가신청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인)** | | | | | | | | | | | | | | | | | |
| **박람회 참가규정** | | | | | | |
| **2019년 8월 8일(목) ~ 8월 11일(일)** | | | | | | |
| **수원컨벤션센터** | | | | | |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제32회 맘앤베이비엑스포 (Mom & Baby Expo)를 의미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기업, 공공단체,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구로4길 39, 4층 (신당동,청운빌딩) 소재 (주)유아림을 말한다.

**제2조 참가 신청 및 계약**

1. 본 박람회는 주최자인 (주)유아림과 전시자인 개인, 기업, 공공단체, 협회 및 업체와의 계약으로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현금으로 참가비의 일부를 납부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3. 잔금(부가세 포함)은 2019년 7월 11일(목)까지 현금으로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시자가 참가비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 및 계약을 해지 또는 임의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에게 기 납입한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4.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5. 전시회 참가 승인 이후 전시자는 주최자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안내문 일체(이메일, 문자 등)를 전시회 참가 전 필히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전시자의 공지내용 미확인 및 이행사항 미 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3조 전시품 규정**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중에 전시, 시연, 판매된 전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관람객이 제품의 하자문제 등을 이유로 주최자에 보상 요구를 하는 등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시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주최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 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

**제4조 부스의 배정**

1. 부스 배정은 주최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스 배정의 사유로 환불 등의 청구가 불가하다. 또한 기 배정된 전시면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효과, 안전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하여 참가비 환불이나 기타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5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나, 천재지변 및 전염병 발병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 등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참가비 등 참가신청과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된다.

|  |  |
| --- | --- |
| **참가 취소 시기** | **위약금** |
| 2019년 5월 26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 위약금 납부 |
| 2019년 5월 27일 ~  2019년 7월7일까지 취소 | 참가비의 80% 위약금 납부 |
| 2019년 7월8일 이후 취소 | 참가비의 전액 위약금 납부 |

**제7조 해약**

1.주최자는 다음의 경우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전시자가 주최자의 부스배정에 대한 이의로 인해 참가를 거부할 경우

- 전시 참가신청서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할 경우

- 전시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최자의 진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 경우 전시자는 납입한 참가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보험, 보안 및 방화 안전**

1. 주최자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모든 전시품목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이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전시시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반드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주최자는 박람회 운영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시장 및 전시부스 관리**

1. 전시회 운영 기간은 2019년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이며,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운영기간(4일)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부스 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전시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계약한 부스면적을 벗어나 전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4. 부스 내 호객행위 및 이벤트 진행에 있어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음향기구 사용을 금하며,

관람객 및 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연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는 전시 운영상 안전을 위해 전시 중지 또는 부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카드사와 연계한 부스 참여 및 카드영업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만약 부스 내 카드영업 활동 발견 시 주최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전시회 운영기간 내 전시품 사전 반출을 절대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전시회 이미지 타격 및 근접부스의 운영 손실에 대한 모든 손해는 전시자가 배상하며 참가비 환불 등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7. 전시자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시회 운영상에 있어서 주최자의 진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참가비 환불 등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8. 독립부스 신청 업체 중 자체시공을 할 경우 주최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자체시공 서류를 필히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주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주최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철거 및 원상 복구**

1. 설치 및 철거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설치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목 반출기한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최자가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전시자는 주최자 및 수원컨벤션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과 관련하여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관할 법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